

준비 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관련, 10월 10일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예(11월 6일 수령)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변론 준비합니다.

다 음

1. 제출기한(10월 31일) 위반

10월 10일 자 석명준비 명령의 제출기한은 10월 31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피고는 11월 3일 뒤늦게 제출하였습니다(갑 제67호증).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 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제출된 배형주 증인신청의 위법성에 대하여

10월 31일 제출한 답변 준비서면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피고의 부당징계, '정직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가 심리 판단한 세가지 징계사유들은

1. 성적평가에 대하여
2. 교수회의 불참석에 대하여
3. 수업 중에 욕설을 함부로 하고 동료교수 비방 또는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학본부에 내용증명으로 수 차 질의 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니다. 그 중 세 번째 징계사유 (3)은,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가

“수업시간 중에 욕설을 하고 동료교수를 비방하였다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청구인(원고)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이러한 사실이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갑 제6호증,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라고 판시, 이미 심리 확정된 징계사유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 (3)에 관련된 피고의 증인신청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요 법적 안정성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고 주장의 정당함은, 아래 두 대법원 판례들로부터도 명백합니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047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학교법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6.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판결원문] “원고들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 일에 위 각 면직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복직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3.1.17. 62도213

[판시사항] 원심이 환송된 사건에 있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다시 심리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 원심이 위 무죄부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불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3. '2의 나'에 언급된 성적 평가들에 대하여

절대평가 정의(10월 31일 자 원고의 준비서면) 의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1년도 2학기 위상수학, 92년도 2학기 위상수학2는 **시효 2년도 넘은 것으로**, 피고의 억지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5. 1. 26. 징계청원, 을 제14호증의 1).

결론: 위 1, 2, 3으로부터, 11월 3일 제출된 피고의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은 수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시켜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4. 보충 증거: 책임용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증거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이석태 변호사에 의한, 93년 3월 1일자와 96년 3월 1일자 책임용 연구실적 심사자료 [문서제출명령신청](#)(갑 제68호증) 따라,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피고는 갑 제1호증과 제2호증 이외에, 연구실적심사위원 추천과(갑55호증)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1월 7일

위 원고 김명호

입증 자료

1. 갑 제67호증, 피고의 11월 3일 자 준비서면 첫페이지
1. [갑 제68호증](#), 문서제출명령신청(93, 3. 1 일자 재임용 연구실적 심사자료)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